'줄기세포 배양 클린룸 구축' 제안요청서



2022. 03.

아주대학교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줄기세포 배양 클린룸 구축

2. 목적

- 가. 기존 클린룸 연구공간(토목실험동 111호) 이전을 위한 클린룸 구축
- 나. 클린룸 업그레이드를 통한 적극적인 연구활동 및 국고사업 확대
- 3. 공사위치: 에너지센터 509-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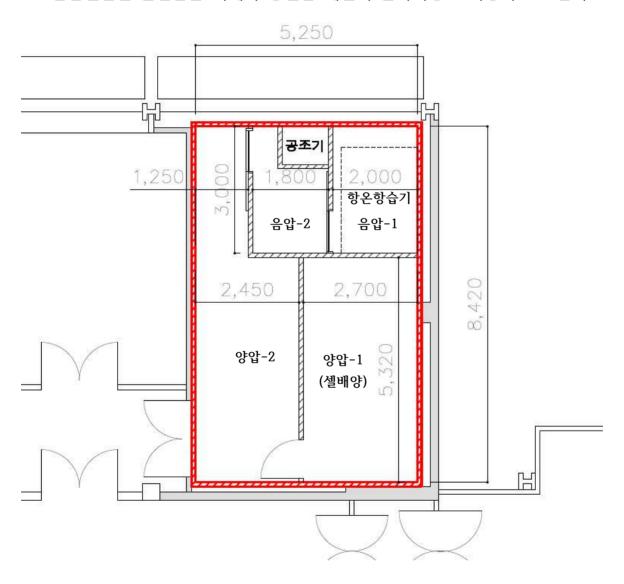
4. 주요사업내용

- 가. 본교에서 제시하는 배치(안) 및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개선된 대안을 제시나. 아래 내역을 포함하여 견적에 반영
 - 1) 클린룸 구축을 위한 장비 및 공사 일체
 - 2) 항온항습기(5HP) 신규 설치
 - 3) 기타
 - ▷ 소방 감지기 설치 포함
 - ▷ 전기 공사, LAN, 보안시설 설치는 학교에서 별도 발주
- 5. 계약기간(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 6. 사업비용: 64,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클린룸 배치(안) 및 설치 기준

1. 클린룸 배치(안)

- 아래 배치(안)을 참고하여, 음압실험실 2개실, 양압실험실 2개실 설치한다.
- 음압실험실 외벽에 창문을 신설한다.
- 음압실험실 출입문은 벽체와 동일한 재질의 슬라이딩 도어형식으로 한다.



2. 클린룸 유지 조건

- 온도 23 ± 2 °C / 습도 55 ± 5%
- 항온항습기(5HP)를 신규 설치 하여 온습도를 유지
- 클린룸 상부판넬 필터(헤파필터)

3. 양압 / 음압 실험실 구성

- 실험실별 양압, 음압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5HP)를 설치하며, 음압 구역은 별도의 배기장치를 통하여 항시 음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급배기 덕트 공사를 포함한다.
- 실험실내 급배수, C/W 공급배관 공사를 시행한다.
- 적정한 실험용 싱크대를 설치하고, 일반 급·배수관과 실험수전을 설치하며, C/W(크 린워터) 1구 수전을 설치한다.

4. 공조기 설치

- 공조기 실내 설치에 따른 방음시설(벽체 포함)을 설치한다.

5. 일반조건

- 1) 각 실험실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되, 현장실측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여 제안한다. 공사과정에서 일부 판넬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없이 진행한다.
- 2) 판넬 (H: 3,000)
 - URETHANE PANEL / 난연3급(50T) 이상
 - 내부 HI PIPE 전선관 매입
 - AL. 부자재는 아노다이징 산화피막 처리된 제품을 사용
 - 도어 STOPPER 설치
 - 각 실 출입문에 실험실 내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유리(강화유리)를 설치한다.
- 2) 바닥: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본드 제거 포함) 후, 에폭시 라이닝(3T)
- 3) 덕트
 - 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 시 0.8t이상 칼라 강판으로 케이싱 한다.
 - 나. 강판의 연결부위는 실리콘 코킹으로 공기의 누설을 차단한다.
 - 다. 덕트의 이음부는 패킹재의 사용으로 공기 누설을 차단한다.
 - 라. 보온재는 아티론 25t 사용한다.
- 4) 기존 실험실(토목실험동 클린룸)의 실험기기 및 장비 배치 현황을 참고하여 제안 한다.

6. 안전관리

- 1) 현장 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각반, 마스크(코로나전염예방) 반드시 착용

- 교내 전 구간 마스크(코로나전염예방) 착용
- 2) 현장 내 절대 흡연금지 : 1회 적발시 해당 작업자 즉시 퇴출
- 3) 출근시 근로자 온도체크(매일 1회) 실시 : 체온 37.5℃ 이상시 현장출입 금지
- 4) 용접·용단 작업 신고 및 용접작업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붙임2)

Ⅲ 견적조건

- 1. 도면 및 현장실측에 의한 물량과 단가를 표시한 내역서를 제출한다.
 - 물량산출 및 단가산정 잘못은 인정치 않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없음
 - 제공된 자료을 참고하되, 반드시 현장실측 및 현장여건을 확인 후 견적해야 함. 실측 오류 및 현장 공사 여건 확인 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없음
- 2.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비용을 내역에 포함하며, 공사 후 정산한다.
 - 정산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 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 환수해야 함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 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 계약이 가능함.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 3. 모든 공사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LH전문시방서 및 관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4. 모든 자재는 각 제품(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및 시공방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5. 지급자재
 -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시설비는 업체 부담)
 - 상기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포함 견적
 - 기타 작업발판등 모든 가설자재는 지급치 않으며 설치 및 해체, 정리는 일체 시 공자 부담임.
- 6. 공사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주차료 납부 포함 (단, 덤프,지게차,레미콘,철근 츄레라는 제외)

- 주차료 : 1,000원/2시간, 2,000원/4시간, 3,000원/당일, 30,000원/월
- 7. 공사기간 중 현장소장 1명 상주 조건
- 8. 시공중 시공자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는 시공자 책임하에 처리
- 9. 본 공사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10. 자재의 보관, 운반 및 취급시 파손에 유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11. 폐기물처리, 준공청소까지 견적포함
- 12. 폐 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 13. 현장 주위는 매일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학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
- 14. 노출된 공간에서는 탈의를 금해야 하고, 단정치 못한 행위로 인해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들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5. 소음 및 진동이 심한 작업은 야간, 주말, 휴일작업으로 시행하여, 최대한 학교 수 업·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소음, 진동, 악취 유발작업은 작업전 학교측과 협의 후 시행
 - 인근에 위치한 원천관은 강의실·실험실 위주의 건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

IV 제안서 제출

- 1. 제출서류
 - 설계설명서 A4 10부
 - 설계도면 A3 10부
 - 공사 지명원 A4 1부
- 2. 최종견적금액 견적서 2부
 - 제시된 금액 내에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 나. 본교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나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다. 제출된 제안서 / 서류 / 별첨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 체가 부담 한다.

V

계약조건 (업체선정방식)

1. 업체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가) 입찰공고
- 나) 입찰참가(제안서) 접수, 평가
-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조건 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된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 및 절차 의거, 차 순위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이 경우에도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라)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만 입찰참가가능)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 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업체
- 마)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업체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제출)
- 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클린룸 공사완료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협상 후 계약 진행방식

- 가) 협상 진행기일
 - 협상진행기간은 본교 구매관재팀 담당자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과 대상등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건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나) 계약 진행기일

-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1) 협상 결렬에 관한 사항
 - 가) 와 나)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안업체가 협상 및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본교는 해당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결렬하고 차순위 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협상 결렬의 통보는 전자우편, 우편 혹은 유선으로 진행한다.
- 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 제안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신 청 시 제출해야 한다.
 - 협상대상자가 나)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해당 자의 향후 입찰 및 제안참여가 제 한될 수 있다.
-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규정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 4) 평가결과 관련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처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본 대학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대금지급방식

- 가) 본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교는 본 항의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나) 본 조의 대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청구 및 지급시기와 그 방법은 본교의 회계 처리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본교는 필요에 의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VI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식

- 가) 평가는 제안평가 80% 및 가격평가 20% 비율로 평가
- 나) 제안평가(80%) : 본교가 별도의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아주대학교 제안 서 평가위원회 운영방식 안내문 (업체 공지용) 의거하여 평가실시(아래 링크 참고요망)
- 다) 가격평가(20%) :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
- 라) 위 평가배점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평가표 (안)

평가영역 (배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지표	신용도	. 입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10	
		유사 사업실적	. 입찰업체의 유사 사업실적 규모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금액이 30,000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인정 가 능함	20	
	소계				
제안평가(80)	정성 평가 지표	사업 관련 기술. 지식능력	. 시공사 실험실 적합성 . 실험실 설계 Concept의 적절성 . 실험실 실행 Plan에 대한 구체성 및 기대효과	30	
		평가	인력. 조직	. 시공사 실행자 전문성(경력, 경험) . 시공사 조직의 우수성 . 시공사 기계설비 면허 보유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 시공사 사후 지원방안	10	
	소계			50	
합 계				80	

※ 위 평가표 및 평가항목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아주대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방식 안내문 (업체 공지용) 참고 요망

VII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 엄수하여 도착해야 한다.
-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 다)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본교 해석이 우선한다.
- 라) 본교는 필요 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마) 제출된 제안서 / 서류 / 별첨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부담 한다.

2. 문의처

- 가) 입찰 관련: 구매관재팀 이지희 (031-219-2067)
- 나) 제안 내용관련 질의응답
 - 질의: 2022. 4. 00. 14:00 / yshong@ajou.ac.kr 이메일로만 접수
 - 응답: 2022. 4. 00. 18:00 일괄 답변

※ 첨부자료

- 1. 유사사업실적
- 2. 용접·용단 작업 신고 및 용접작업 화재예방 안전수칙
- 3. 간접비 정산 확인서

[첨부1]

유사 사업실적

- 기재기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대학(교) 개보수 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실적 (단, 계약금액이 75,000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구분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 1.}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또는 3. 본교가 인정한 실적증명서류(위 정보 모두가 확인 기능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필 날인 필) 제출바람. (확인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취소 및 계약해제·해지 예정임)

[첨부2]

용접·용단 작업 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건축물)
- O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해야하는 인테리어 등의 공사현장

□ 신고일 및 방법

- 용접작업 시작 3일전 신고(긴급히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즉시)
- 전화·방문 신고(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상황실 및 각 119안전센터)

□ 신고자 및 내용

- O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용접·용단 작업자
- O 용접작업 장소, 작업범위, 기간, 연락처 등

□ 작업전 사전준비 사항

- O 작업전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통보 및 화재감시인 배치
- O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 소화기 비치
- O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의 점화원 차단 조치

□ 신고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 용접작업 신고대상에 대하여 소방관이 작업장을 방문, 안전수칙 지도·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의 안전컨설팅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	용접 · 용단작업/	기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신 고 처	전화번호	관 할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031-8012-9311~14	수원시 전체(주간)
수원소방서 상황실	031-8012-9120	수원시 전체(야간)
정자119안전센터	031-8012-9501~8	팔달구: 고등동, 장안동, 북수동, 신풍동, 화서1・2동 장안구: 영화동, 조원동, 정자2・3동, 송죽동 팔달구: 인계동, ▶ 영통구: 매탄3동 권선구: 대황교동, 곡반정동, 권선동, 장지동 팔달구: 팔달국1,2,3가, 남창동, 영동, 중동, 매교동, 매산동,
남부119안전센터	031-8012-9511~8	팔달구 : 인계동, ▶ 영통구 : 매탄3동 권선구 : 대황교동, 곡반정동, 권선동, 장지동
매산119안전센터	031-8012-9521~5	팔달구 : 팔달로1,2,3가, 남창동, 영동, 중동, 매교동, 매산동, 세류2·3동
원천119안전센터	031-8012-9531~4	영통구 : 매탄1·2·4동, 원천동
지만119안전센터	031-8012-9551~4	팔달구 : 지동, 남수동, 우만1·2동, 매향동
서둔119안전센터	031-8012-9561~5	권선구 : 서둔동, 탑동, 입북동, 당수동, 구운동
파장119안전센터	031-8012-9571~5	장안구 : 파장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정자1동
이의119안전센터	031-8012-9581~4	장안구 : 연무동 ▶이의동, 하동, 영통구 : 하ㆍ상광교동
고색119안전센터	031-8012-9591~5	권선구 :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세류1동
영통119안전센터	031-8012-9141~4	영통구 : 영통동, 망포동, 신동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 수칙요약

- **용접·용단 직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KOSHA Code) 수 3단계(전·중·후) 인전조치 규정
- 주요내용 : ① 작업전 책임자·안전관리자 통보 및 화재감시인 배치
 - ② 작업 중 안전조치(소화용품, 방염시트, 무전기 등 비상연락 수단)
 - ③ 작업 후 30분 이상 불씨 감시

□ 용접작업 전

- 제4호 화재감시인(4.1 화재감시인의 배치)
 - 작업반경내(11m) 불티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 대비한 소화설비 구비
- 제5호 용접·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예상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등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알림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안전관할부서장)에게 사전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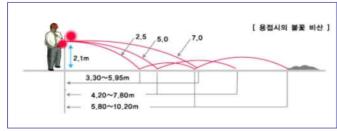
□ 용접작업 중

- O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O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O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용접작업 후

O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 **용접작업의 위험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관련



▶ 점화원 관리

용접작업시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완료한 뒤 용접·용단작업을 합니다

용접작업 관련 소방법령 규정

- □ 규정요약 ☜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O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둘 것
 -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곤란시 방지포 등 방호조치)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 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2. 용접 또는 용단 <u>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u>,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3조(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소방기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불티가 생기는 설비)의 관리기준

- 1.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준)불연재료로 마감
- 2. 인화성, 폭발성 물품 또는 가연물(이하 인화성 등 물품)의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3. 인화성 등 물품 안전거리 확보에 의한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게 할 것
- 4. 정전기로 인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 5.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소에는 분말소화기(3.3킬로그램 이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② 제1항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 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첨부 3]

확 인 서

- □ 업체명:
- □ 성 명:
- □ 소속부서 :

<u>"줄기세포 배양 클린룸 구축"</u> 진행완료 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명기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발주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기존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미지급하며,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

예외로 안전관리비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계약이 가능하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 증빙서류 :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사명 기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기준 :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증빙서류
 - 1)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 2)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한 경우만 인정
 - 3) 물품구매 :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사본, 반입사진, 설치사 진, 설치위치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현장배경 물품 반입 사진(전수), 근로자 실 착용사진(지급 물량 = 근로자 사진), 착용 후 작업사진, 지급대장(대상자 서

명포함) 등

- 안전시설비 : 설치 위치 표기 도면, 수량산출, 반입사진, 설치사진 등
- 4)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계약서, 이체확인증, 교육자료, 교육 사진 등
- 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계약서, 이체확인증, 재해예방 지도에 따른 증빙 문서 등

○ 인정불가

-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 관리비의 항복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
- 안전시설 및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불가
- 신호수 :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현장 외부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
- 안전시설 : 현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휀스 및 분진망 등

3. 환경보전비

-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증빙서류
 -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작업사진
 - 물품구매, 환경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료비 :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구입물품 사진(전수), 작업 사진, 현장에 설치된 사진 등

○ 인정불가

- 현장청소 인건비,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단순 청소용품 : 마대, 마스크/장갑,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이, 집게, 삽 등)
- EGI 펜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환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 폐기물 처리비(별도내역으로 지급)

※ 공통 유의사항

- 1) 공사착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사용계획서 제출시 승인된 목록 이외 항목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2) 신용카드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제출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 위조·변조하여	허위 작성하	거나 준공 이호	후 변경발급	및	취소시	환
	수조치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	수 있다.					

2022. .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	가. 안전 ·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의 인건비 및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u>영 별표3 제46호에 따</u>
각종 업무 수당	<u>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u>
드	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호 관련)	3) 영 <u>제17조</u> 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 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u>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u> <u>하지 않은 경우</u>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 · 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 · 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 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제7조제1항제2	안내 · 주의 · 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 · 시설이 안전장치와
호 관련)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 · · · · · · · · · · · · · · · · · ·
	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
	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
	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
	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 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
	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 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
	다) 다 가장할 때의 자재미(군인미는 인신산디미도 가장할 구 있 다)
	• *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 · 후생적 근무여건 개선 · 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 ·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 · 보건업무를 담당 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u>방한장갑</u> ,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 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 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나.「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 · 해체 · 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 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수 50	사 용 불 가 내 역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한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 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0 7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총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 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 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확 인 서

□ 업체명:

□ 성 명: (서명)

□ 소속부서 :

□ 휴대폰번호 :

"<u>줄기세포 배양 클린룸 구축</u>" 입찰을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현장설명서, 도면 등)는 입찰 참가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사용 목적이 상실(입찰 미참여시 미참여 결정 직후, 입찰 참여시 전자입찰 완료 직후)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한다.

2022년 월 일